

#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특수계약 조건

계약하고자 하는 업체를 “용역수행자”라 칭하여 본 특수조건은 “2016년 관내 하수시설물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에 적용한다.

## 제1조 (처리의 위탁범위)

1. 강북구청 “2016년 하수시설물 정비공사(연간단가)” 등의 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에 적용하며 본 공사의(용역)의 설계물량은 추정물량으로서 처리송장(계근표, 인계서) 및 공사 정산물량등에 의거 정산하고, 물량의 증·감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설계변경 할 수 있다.

2. 기타 “강북구청”이 처리 요구하는 폐기물

## 제2조 (계약기간)

1.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016. 12. 30일 까지로 하되 시설공사가 연기될 경우 새로운 폐기물처리업체 선정시까지 계약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폐기물처리 단가는 **계약단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처리한다.

## 제3조 (처리방법 등)

1. 폐기물 운반·처리에 필요한 인력·장비는 “용역수행자”가 부담 처리하되 “강북구청” 또는 공사시공자가 요구하는 폐기물 반출일정에 맞추어 인원과 장비를 차질없이 동원하여 합법적인 절차로 운반·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운반지연으로 공사진행을 어렵게 하거나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사업착수전에, 투입될 운반장비가 치수·하수사업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에 사용되는 장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시에도 사전에 위와 같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에는 반드시 폐기물과 토사가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수집·운반하여야 하며, 감독(감리)확인 계근을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현장감독, 감리 미확인 반출량은 처리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용역수행자”는 사토장 또는 폐기물 발생현장에서 운반·처리되는 폐재류를 성상별로 처리한 업무일지를 비치하고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수행한 작업일지를 2부 작성하여 그중 1부를 폐기물반출 간이인계서를 첨부하여 공사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에 흘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고 운행시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6.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7. “용역수행자”는 수집·운반된 아스콘, 콘크리트등 폐기물에 대하여 계약된 폐기물처리장에서 폐기물관리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적법하게 중간재생처리하여야 한다.

8. “용역수행자”는 용역계약기간중에 폐기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1일 1대 이상의 운반차량을 현장에 배차하여야 하며, “강북구청”이 추가로 「임시폐기물 운반차량 및 암롤트럭」을 배차요구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9. 폐기물 처리수량 산출시 단위중량은 무근콘크리트 2,300kg/m<sup>3</sup>, 철근콘크리트 2,400kg/m<sup>3</sup>, 아스콘2,350kg/m<sup>3</sup>, 혼합건설폐기물 1,830kg/m<sup>3</sup>으로 한다.

단, 혼합건설폐기물이라함은 건축물 철거시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류, 금속물, 철재류, 가구류등이 혼합된 건축폐기물을 말한다.

10.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반출에 따른 반출량 확인을 위하여 “강북구청”의 표본계량 요구시 공인계량소에서 표본 계량에 응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1. 폐기물 반출시에는 반드시 공사감독 또는 폐기물 발생 사업장의 현장대리인 확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 한다.

12. “용역수행자”는 폐기물 운반에 따른 “과적방지 계획서” 및 과적은행위금지 서약서“를 ”강북구청“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폐기물 계근시 해당 차량의 적재중량이 초과되는 물량을 인정하지 않는다.

#### 제4조 (계약수량의 최종정산)

1. 본 용역의 설계물량은 추정물량으로써 폐기물처리물량이 증·감 될 수 있으므로 준공물량이 계약물량이며, 기타공사는 준공 정산수량을 계약수량으로 한다.

#### 제5조 (대금지급방법)

1. 기성청구는 작업이행된 물량(계근표 확인수량)에 대하여 도급자가 필요시 청구할 수 있다.

2. “용역수행자”는 용역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처리가 완료되었을 때 준공 신고서등 제반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3. “강북구청”은 “용역수행자”의 제출서류에 따라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폐기물 간이 인계서등)한 후 사업장별로 각각 정산 준공조치하고 재무회계 규정에 따라 대가를 지급한다.

## 제6조 (용역수행의 성실)

1. “용역수행자”는 “강북구청”이 제1조에 위탁한 폐기물처리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자”는 계약이행중 “강북구청”의 일시적 사정에 의해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 제7조(관리의 책임)

- ① “용역수행자”는 “강북구청”이 지시하는 바에 따라 제1조에 위탁한 업무를 성실히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용역수행자”는 “강북구청”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탁 업무를 중단하여서는 안된다.
- ③ “용역수행자”는 계약내용을 “강북구청”의 지시에 따라 이의 없이 이행하고 적극 협력하여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야 한다.
- ④ 공사감독 또는 현장대리인이 구두 또는 서면으로 작업지시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처리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적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 방치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수행자”가 진다.

## 제8조(면책)

폐기물 처리업무 수행 중 발생한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한 보상 및 제3조에 명시한 처리방법 위반시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용역수행자”가 진다.

## 제9조(업무협조에 따른 편의 협조)

“강북구청”은 “용역수행자”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적극 협조한다.

## 제10조(통보사항)

“용역수행자”는 계약기간 중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강북구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11조(해약)

- ①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약(해지) 하고자 할 때는 7일전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용역수행자” 또는 그 종업원이 본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고의

또는 태만으로 “강북구청”의 지시를 이행치 않으므로 해서 “강북구청”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약(해지)한다. 이때에는 모든 손실, 손해 등 피해에 대하여는 “강북구청”의 요구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책임처리 한다.

- ③ “용역수행자”는 “강북구청”이 지시한 폐기물 위탁처리 업무를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하여 본 공사에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민원을 발생시켰을 때에는 “강북구청”은 계약을 해약(해지)할 수 있으며 “강북구청”은 계약해약(해지)으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12조(설계변경 등)

- ① “용역수행자”는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에 대한 계약 이행 전에 지체없이 현장 감독 직원을 경유하여 계약담당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계약담당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위탁업무수행이 적정히 이행될 수 있도록 설계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계약담당은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키거나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역수행자”에게 서면으로 이를 요구할 수 있다.

### 제13조(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① 계약담당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량의 증, 감이 발생할 때에는 당해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② 계약금액의 조정 시 증감된 수량의 단가는 공사입찰 유의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상의 단가(이하 “계약단가”라 한다)로 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조서상의 단가(이하 “예정가격단가”라 한다.) 보다 높고 물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물량에 대한 적용단가는 예정단가로 한다.
- ③ 운반거리는 강북구 주변 경기동북부 지역의 폐기물처리 업체 최단거리인 21Km로 설계되어 있는 바, 건설폐기물 운반거리 정산은 최종 건설폐기물을 처리한 실제 운반거리로 정산한다.

“단” 운반거리가 21Km를 초과하는 운반거리는 21Km로 정산한다.

### 제14조(문서의 귀속)

“용역수행자”가 계약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도면, 문서 등 “강북구청”이 필요한

자료 등은 “강북구청”에게 귀속한다.

#### 제15조(계약의 발생과 소멸)

본 계약을 폐기물 처리를 개시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효력이 자동 소멸한다.

이상과 같이 본 계약을 입증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특수조건』 2통을 작성, 쌍방간에 서명 날인하고 “강북구청”과 “용역수행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6. 3. .